

CONTACT



변호사 고훈경

T: 02.2191.3057
E: hwankyoun.g@leeko.com



변호사 강현구

T: 02.772.4429
E: hyunkoo.kang@leeko.com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



전문위원 김시홍

T: 02.6386.0756
E: sihong.kim@leeko.com



수석전문위원 조성인

T: 02.6386.0739
E: sungjin.cho@leeko.com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며,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이후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9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광장 뉴스레터 2023.5.19.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참조)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배경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의하여 더욱 촉발되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를 추가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수정 끝에 2023년 8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리고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①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② 선불충전금의 보호 강화,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④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에 업종 기준(2개 업종)을 폐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자상품권(리류식 중 전자식으로 변환된 증표 포함), 모바일쿠폰, 포인트 등

기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으로 규제되던 것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1개 가맹점)하고, 총발행잔액 기준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보호 강화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선불충전금에 대하여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 때 안전한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와 유사하게 이용자 자금을 동 가이드라인의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선불업자가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사업자들도 법 시행후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등 현재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수준에서 세부 행위 규칙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사점

선불업 규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의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통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불업 등록을 하도록 하여 공포 후 약 1년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형사벌칙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라도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선불업에 등록할 의의가 있는지, (등록대상이라면)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선불업자로서 등록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경영하고자 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업무범위, 이용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